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19가단13112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피 고 1. B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김순길

변 론 종 결 2021. 6. 1.

판 결 선 고 2021. 8. 10.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208,219원 및 그중 3,319,109원에 대하여 2019. 6.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 23,420,411원에 대하여 2019. 6.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17. 8. 14.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8. 14. 접수 제711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7. 5. 18. D 주식회사에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위 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나 그 이용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의 연체이율은 연 23.5% ~ 27.9%이다. D 주식회사는 2017. 10. 13. E 주식회사에, E 주식회사는 2018. 3. 20. 원고에게 각각 피고 B에 대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각 그 무렵 피고 B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피고 B은 2017. 2. 16. F 주식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기간 48개월, 이율 연 25.8%, 연체이율은 약정금리에서 연체 기간에 따라 연 8%에서 연 12%까지 가산하되 최고 연체이율을 연 27.9%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F 주식회사는 2018. 12. 7.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8. 12. 28. 피고 B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9. 6. 12. 기준으로 피고 B의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의 연체 금액은 원금 3,319,109원, 이자와 비용 및 지연손해금 1,675,805원 합계 4,994,914원이고, 위 차용금 채무의 연체 금액은 원금 23,420,411원, 이자와 비용 및 지연손해금 11,792,994원 합계 35,213,305원으로 총 합계 40,208,219원이다.

라. 피고 B은 2017. 8. 14. 피고 C에게 피고 B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90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8. 14. 접수 제71164호)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와 차용금 채무 외에도 G카드, H카드, I조합, 기업은행 등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J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양수금 40,208,219원 및 그중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원금 3,319,109원에 대하여 2019. 6. 13.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5%, 대여금의 원금 23,420,411원에 대하여 2019. 6. 13.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관할위반 주장

가) 주장 요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는 취소로 인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이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지는 그 등기관서 소재지이다(대법원 2002. 5. 10.자 2002마1156 결정).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토지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된 소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소에서 공동피고 B에 대한 양수금 청구는 금전채권에 관한 것으로 의무이행지는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이다. 원고는 공동피고 B에 대한 양수금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조의 관련재판적 규정에 따라 공동피고 B에 대한 의무이행지

법원인 이 법원에 피고 C에 대한 청구도 관할권이 있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척기간 도과 주장

가) 주장 요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17. 8. 14.이고, B이 D 주식회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한 후 D 주식회사가 E 주식회사에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양도한 2017. 10. 13.이나 적어도 E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같은 채권을 양도한 2018. 3. 20.에는 채권양도인들이나 원고가 취소원인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1년 이상이 도과되었음이 분명한 2019. 7.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그리고 사해행위가 있는 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14.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점과 B이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한 후 2017. 10. 13. D 주식회사가 E 주식회사에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E 주식회사가 2018. 3. 20. 원고에게 같은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채권양도인들이나 원고가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 B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와 차용금 채무를 비롯하여 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채무자 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는 B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 C는 2013. 4.경부터 2017. 11.경까지 B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액이 누적되어 약 5,200만 원 상당이 되고 B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 C와 B은 B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피고 C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채권자인 주식회사 K에 대한 채무 4,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4,9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피고 C는 위 근저당채무에 대한 이자를 계속하여 지급하고 있다. 즉, 피고 C는 B에 대한 채권을 정당하게 추심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또한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 의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나 존재하였다면 그 채무금액이 얼마인지 불명확한 점, 피고 C 계좌에서 B의 보험료, 가스대금,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 출금된 것으로 보아 피고 C와 B이 단순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C 스스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이 하던 사업이 잘 안 되어 피고 C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2020. 5. 18.자 피고 C의 준비서면 제1쪽) B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에도 그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점(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 7873 판결 등)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이재은

부동산 목록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대 50㎡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조표 []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주택

1층 내지 3층 각 43.56㎡ 각,

